

경상북도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: 경상북도교육청 정책국

2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4년 4월 12일, 조용진 의원 외 12명

나. 회부일자: 2024년 4월 15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○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

(2024년 4월 2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: 조용진 의원

나. 제안이유

○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의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○ 교육감, 교육장,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○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
○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이경형)

가. 제안취지

- 본 조례안은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의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본 조례안은 총 6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먼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과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는 정의와 교육감 등의 책무에 관해 규정함.
- 그리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특수학급 설치계획의 수립,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.
- 안 제6조는 특수학급의 설치 등에 관한 지원을 규정함.

다. 종합의견

- 최근 5년간 도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18%(연평균 4%증가, 2019년 4,973명 → 2023년 5,878명) 증가로 인해 특수교육기관(특수학급) 확충에 방점을 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.
-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유형·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함에도, 거주지 인근 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원거리 학교로 통학하고 있음.

- 일부 지역에서는 중도·중복장애학생이 인근 특수학교까지의 원거리 통학하고 있으며, 특수학교 정원 초과에 따른 과밀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, 특히 도시지역에는 특수학급 수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특수학급 신·증설이 필요한 실정임.
- 따라서 본 조례안은 제정 취지 및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고,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 절차를 준수하였으며, 특수학급 설치 및 시설기준의 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체계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합당한 입법 조치라고 판단됨.
- 다만,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통합교육 환경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「없음」

7. 수정안의 요지: 「없음」

8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: 「없음」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「없음」